

제주에너지공사 「2023년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에 관한 지침」 제8조(전문기업 제안 및 평가)에 따라 「2023년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에 참여할 전문기업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 2023년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전문기업 모집(수정)

### 1. 모집분야

세부사업	대상	사업비 (천원)	지원 범위(내용)
주택·마을 공동이용시설	도내 마을공동이용시설	273,859	○ ~15kW/개소 신규 설치 ○ 기설치 태양광설비 A/S - 인버터/모듈/접속함 교체 등
	道 & 제주에너지공사로부터 지원받은 주택 태양광설비 (하자기간 만료 대상)	30,000	○ 기설치 자가용 태양광설비 점검

- ※ 각 사업비는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마을공동이용시설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요 조사한 대상지를 우선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합니다.
- ※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설비 신규 설치 지원금 단가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가격: 1,944,000원/kW, VAT 포함
  - 설치가격은 설계비, 감리비, 관련 법률에 의한 안전설비, 사용전점검(검사)비, 상계거래 비용, 구조검토 등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 ※ 주택 자가용 태양광설비 점검비 단가는 [별첨2]를 참고하고, 세부사항은 공사 기준에 따릅니다.
- ※ 보급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2023년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에 관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2. 신청자격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도내 기업

※ 도내 기업 기준

-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기업
- 전기공사업등록증상 영업소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기업

## 3. 평가 및 선정 절차

구분	세부절차
1차 평가	신청자격 평가
2차 평가	①기술인력 보유 ②시공실적 ③기업신용도 ④제품 ⑤기업규모 ⑥하자보증기간(의무) ⑦생산물책임보험 가입여부(의무) ⑧사업기간 준수율 ⑨A/S미이행실적 ⑩의무사후관리수행 ⑪보급사업 감점이력 ⑫사건사고 유발 ⑬기업형태
전문기업 선정	1차, 2차 평가에서 합산점수가 <b>70점 이상인 상위 기업(3개 기업)</b> 을 대상으로 제주에 너지공사 공고 제2023-59호 「2023년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에 관한 지침」 제8조(전문기업 제안 및 평가)에 의거하여 적격심사에 통과한 기업을 최종 선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발생 시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높은 취득점수 순으로 순위를 정함.

✓ 1순위: ⑫사건사고 유발 / 2순위: ⑪보급사업 감점이력 / 3순위: ⑩의무사후관리수행 /  
4순위: ⑨A/S미이행실적 / 5순위: ⑧사업기간 준수율

※ 다만, 위 사항에도 동점자 발생 시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높은 순으로 순위를 정함.

✓ 1순위: ②시공실적-설치용량(kW) / 2순위: ②시공실적-설치개소(개소) / 3순위: ①기술인력  
보유-산업기사(인) / 4순위: ①기술인력 보유-기능사(인) / 5순위: ④기업신용평가등급

## 4. 배점항목 및 기준

○ 1차 평가

구분	평가방법
1차 평가	상기 신청자격 적/부 판단

○ 2차 평가

구분	배점항목	배점	비고
2차 평가	① 기술인력 보유 - 보유현황(12점) - 근무경력(12점) - 신규 고용인력(3점)	27	정량 평가
	② 시공실적 - 설치용량(22점) - 설치개소(12점)	34	
	③ 기업신용도(20점)	20	
	④ 제품 - 제품별 원산지(5점) - 제품효율(10점)	15	
	⑤ 기업규모(4점)	4	
	⑥ 하자보증기간(의무)	의무	
	⑦ 생산물책임보험 가입여부(의무)	의무	
	⑧ 사업기간 준수율(-25점~0점) ⑨ A/S미이행실적(-4점~0점) ⑩ 의무사후관리수행(-30점~0점) ⑪ 보급사업 감점이력(-5점~0점) ⑫ 사건사고 유발(참여제한~0점) ⑬ 기업형태(0점~+5점)	가감점 (참여제한~+5점)	
	합 계	100	가점 여부에 따라 100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별첨1] <전문기업 평가관련 항목별 배점 및 세부기준> 참조

## 5. 접수처 및 접수기간

- 접수처(직접방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1길 18-4(도남동), 3층 제주에너지공사 친환경사업부
- 공고일: 2023년 9월 5일(화)
- 접수기간: 2023년 9월 5일(화)~9월 18일(월)
  - 매일 10:00~12:00, 13:00~17: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 6. 제출서류(별첨 참고)

항 목		제출서류
1차	○ 신청자격 평가	○ 보급사업 참여제안서 1부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 첨부서류 확인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전기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2차	① 기술인력 보유 - 보유현황(12점) - 근무경력(12점) - 신규 고용인력(3점)	○ 국가기술자격증(또는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 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증빙 문건 사본 각 1부
	② 시공실적 - 설치용량(22점) - 설치개소(12점)	○ 시공실적 증빙서류 1부 - 시공실적증명서(시공실적확인서) 또는 설치확인서
	③ 기업신용도(20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④ 제품 - 제품별 원산지(5점) - 제품효율(10점)	○ 설치제품 명세서 - 제품별 KS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⑤ 기업규모(4점)	○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1부(해당 시)
	⑥ 하자보증기간(의무)	○ 설치가격제안서 1부 *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⑦ 생산물책임보험 가입여부(의무)	○ 생산물책임보험 가입(예정)서류 1부
	⑧ 사업기간 준수율(-25점~0점) ⑨ A/S미이행실적(-4점~0점) ⑩ 의무사후관리수행(-30점~0점) ⑪ 보급사업 감점이력(-5점~0점) ⑫ 사건사고 유발(참여제한~0점) ⑬ 기업형태(0점~+5점)	○ 기업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확인서) 사본 1부(해당 시)

## 7. 유의사항

- 공고내용 숙지미숙, 제출서류 미비 등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으며, 신청서 제출 후 절대 수정이 불가합니다.
- 금번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제출된 정보는 「2023년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신청을 위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 금번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사업 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전문기업으로 인해 제3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전문기업에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내용을 허위 작성하였거나, 제출 증빙자료 등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검토에서 제외하며, 특히 허위 작성일 경우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 참여제한의 불이익을 받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전문기업에 대해서는 필요 시 제출서류 등의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또는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에너지공사 「2023년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에 관한 지침」 또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8. 기타사항

- 전문기업 선정 발표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전문기업 선정 발표 후 협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별도안내)
  - 상세 내용은 제주에너지공사 홈페이지(www.jejuenergy.or.kr)내 알림마당(입찰정보)을 참조하십시오.
- 문의처: 제주에너지공사 친환경사업부 담당 064-720-7474~5

## 별첨1

# 〈전문기업 평가관련 항목별 배점 및 세부기준〉

### ① 기술인력 보유 배점기준(총점 27점)

○ 기술인력은 2023년 사업 진행 중에 상근하여야 합니다.

- 기술인력 변경 시 변경 후 90일 이내 제주에너지공사에 신고해야합니다.

\* 미신고 적발 시, 보급사업 감점요인 적용에 대상이 됩니다.(주의, 경고, 참여제한 등)

-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기술인력 산정기준에서 제외합니다.

### ○ 기술인력 보유현황(12점)

- 기술인력 배점의 합계는 최대 12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분	국가 기술자격 보유인력	배점
12점 한도	가. 산업기사 이상	
	① 6인 이상	12
	② 5인	10
	③ 4인	8
	④ 3인	6
	⑤ 2인	5
	⑥ 1인	4
	나. 기능사	
	① 6인 이상	8
	② 5인	7
	③ 4인	6
	④ 3인	5
⑤ 2인	4	
⑥ 1인	3	

### ○ 기술인력 근무경력(12점)

- 근무경력 배점의 합계는 최대 12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분	태양광	배점
12점 한도	가. 산업기사 이상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개월 수의 합	
	① 600개월 이상	12
	② 400개월 이상~600개월 미만	10
	③ 200개월 이상~400개월 미만	8
	④ 200개월 미만	6
	나. 기능사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개월 수의 합	
	① 400개월 이상	7
	② 300개월 이상~400개월 미만	6
③ 200개월 이상~300개월 미만	5	
④ 200개월 미만	4	

### ○ 신규 고용인력(3점)

- 신규 고용인력\*에 대해 기술인력당 1점, 청년 고용\*\*일 경우 2점(1인당 최대 2점)
- 신규 고용인력 배점의 합계는 **최대 3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 2023년 신규 채용인력에 해당합니다.

\*\* **공고일 이전(2023. 9. 5.) 기준** 만 34세 이하 신규 채용 인력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 자격증 등 기술인력 제출 자료 확인)

### ※ 기술인력 배점관련 안내사항

1. 기술인력 배점은 보급사업 참여제안을 하는 기업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신규 고용인력을 합계하여 산정합니다.
  - **신규 고용인력은 기술인력 보유현황과 기술인력 근무경력에 중복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 근무경력은 각각 12점 만점으로 계산합니다.
3.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4. 태양광발전 기준인 기술인력이 해당분야의 (산업)기사 1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한 후 탈락 조치합니다.

에너지원	기술인력
태양광발전	건설, 기계,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1명 이상

- \* 기술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의 분류를 따르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정보([www.q-net.or.kr](http://www.q-net.or.kr))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확인 가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2023년도 전문기업 모집 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2023년 6월 7일까지 채용된 고용자까지 인정합니다. 단, 신규 고용인력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전문기업 모집 공고일 이전(2023년 9월 5일) 고용된 인원에 해당합니다.)
  6.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의해 인정되는 해당분야의 기술자 중에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는 기사로 인정하고, 초급기술자는 기능사로 인정합니다.**
  7. 기술사 및 기능장의 경우 기사로 같음하여 인정합니다.
  8. 동일인이 복수자격을 가질 경우는 상위자격만 인정합니다.
  9. 기술인력보유현황은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국가기술자격증(또는 경력수첩) 사본 1부,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 사본 1부를 인원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육안상 확인이 불가하거나 미제출시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중 1개 보험 가입서류(화면인쇄 불인정)
    - 경력수첩을 제출할 경우 해당분야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확인 불가할 경우 불인정**합니다.

10. 기술인력의 90일 이상 계속 근무에 대한 인정은 해당 기업에서 제출한 4대 사회 보험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11. 기술인력의 근무경력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근무경력의 월 단위 합계이며, 기술인력별 1개월(30일)이 되지 않은 잔여일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 홍길동(20개월 20일), 홍길순(3개월 10일)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합계는 23개월(홍길동 20개월 + 홍길순3개월)
12. 기술인력의 근무경력에 해당 신청기업에서 근무한 근무경력을 모두 합한 근무경력을 인정하며, 다른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홍길동이 한국기업(주)에 입사하여 24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한 다음에 다른 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국기업(주)에 재입사하여 12개월 근무했을 경우 홍길동의 근무경력에 36개월이 됩니다.
13. 신청업체명은 사업자등록증 업체명과 일치해야하며, 신청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작성하기 때문에 불일치 시 모든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14. 해당 에너지원 분야별 기업 면허취득일로부터 기술인력 근무경력 인정합니다.

## ② 시공실적 배점기준(총점 34점)

### ○ 설치용량(22점)

구분	태양광	배점
22점 한도	1,000kW 이상	22
	500kW 이상 ~ 1,000kW 미만	20
	200kW 이상 ~ 500kW 미만	18
	100kW 이상 ~ 200kW 미만	16
	100kW 미만	14

### ○ 설치개소(12점)

구분	태양광	배점
12점 한도	100개소 이상	12
	50개소 이상 ~ 100개소 미만	10
	10개소 이상 ~ 50개소 미만	8
	10개소 미만	6

### ※ 시공실적 배점관련 안내사항

1. 시공실적 배점은 참여제안을 하는 기업의 설치용량과 설치개소 실적을 합계하여 산정합니다.
2. 시공실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시공실적증명서나 시공실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적 인정기간: 2021년 1월 1일 ~ 2023년 9월 5일)
3. 시공실적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75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업, 발전차액지원사업, 공공기관 자체사업, 민간자체사업을 인정하며 물품납품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시공실적증명서(시공실적확인서)는 발주자 또는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설치확인서는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제주에너지공사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기타 시공실적의 인정여부는 제주에너지공사에서 판단하여 정합니다.

- 발주자가 발급한 시공실적확인서의 경우 확인서 내 반드시 **사업분야, 시공용량, 시공개소, 시공금액, 발주처 확인 담당자, 전화번호**를 표기하십시오. (별도양식 없음)
- 발주자가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현장 확인이 가능한 사진 중 2종류 이상의 입증자료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필요시 공사에서 현장 확인)
-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시공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상기 입증자료 제출을 면제합니다.
- 시공실적증명서(시공실적확인서)는 '접수기간('23. 9. 5.~'23. 9. 18.)'내 발행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합니다.(단, 설치확인서는 예외)
  - ※ 설치확인서의 개소가 많을 경우 리스트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소비자 성명, 주소 및 설치확인서 발급날짜, 관리번호 기입을 필수로 합니다.
  - ※ 총괄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실적 이외의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중복 적용 방지)
- 5.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공동도급비율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비율대로 실적을 인정합니다.
- 6.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7. 태양광 설비가 1kW/개소 미만인 경우 설치용량은 실제 설치용량으로 적용하되, 설치개소는 50%만 실적 인정합니다.
  - 예) 300W 7개소 시공한 경우, 실적개소 3개소 인정, 설치용량 2.1kW 적용

### ③ 기업신용도 배점기준(총점 20점)

구분	판 단 요 소	배 점
20점 한도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20
	기업신용평가등급 BBB+, BBB0, BBB-	17
	기업신용평가등급 BB+, BB0, BB-	15
	기업신용평가등급 B+, B0, B-	10
	기업신용평가등급 CCC+이하, 미제출	0

#### ※ 기업신용도 배점관련 안내사항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합니다.
  -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기재된 등급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참여제안서 접수마감일(2023. 9. 18.)이후인 것에 한합니다.
2. 하기의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아닌 경우에는 불인정합니다.(0점 처리)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신용정보업자
    - NICE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주)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 관련 근거: 금융감독원 공통업무자료 게재 ([www.fss.or.kr](http://www.fss.or.kr))

④ 제품 배점기준(총점 15점)

○ 제품별 원산지(5점)

구분	판 단 요 소	배 점
5점 한도	가. 모듈	
	① 원산지가 국산인 경우	3
	② 원산지가 외산인 경우	0
	나. 인버터	
	① 원산지가 국산인 경우	2
	② 원산지가 외산인 경우	0

※ 참여제안 시 제출하는 모든 제품이 국산일 경우만 인정합니다.

○ 제품효율(10점)

구분	판 단 요 소	배 점
10점 한도	가. 모듈	
	① 효율 19% 이상	5
	② 효율 18.3% 이상 19% 미만	4
	③ 효율 17.5% 이상 18.3% 미만	3
	④ 효율 17.5% 미만	0
	나. 인버터	
	① 효율 97% 이상	5
	② 효율 96% 이상 97% 미만	4
	③ 효율 95% 이상 96% 미만	3
	④ 효율 95% 미만	2

※ 참여제안 시 제출하는 전체 제품 중 최저 효율 제품을 기준으로 배점을 적용합니다.

⑤ 기업규모(총점 4점)

구분	판 단 요 소	배 점
3점 한도	기업규모	
	① 소기업	4
	② 중기업	2
	③ 기타	0

※ 소기업 및 중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확인받은 기업을 말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배점 0점으로 처리)

⑥ 하자보증기간(의무)

구분	판 단 요 소	배 점
의무	○ 하자보증기간 적정 여부(최소 5년) ※ 하자보증기간은 공사와의 협약 및 신청자와의 계약 시 제안한 기간 이상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의무

⑦ 보험기간(의무)

구분	판 단 요 소	배 점
의무	○ 시공 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가입(2023년 가입 예정) 여부 ※ 보험 계약체결이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험 청약서 등) 제출 <상품명: ①생산물배상책임보험*(손해사고 기준) ②완성작업위험 ③대위권 포기 특약 ④보상한도: 대인대물 일괄 1억원 ⑤보험기간: 1년> ※ 보험증권상 위의 ①~⑤의 모든 항목이 기재되어야 함  * 설치과정 및 설치 후에 태양광설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인적·대물적 피해보상으로 피보험자는 보급업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신청자)입니다.	의무 (미제출시 선정 제외)

⑧ 사업기간 준수율(가감점, -25점 ~ 0점)

구분	판 단 요 소	배 점														
가감점	○ 사업기간 준수율 - 사업기간 준수율 = (설치기간 내 설치 완료한 사업 수 ÷ 전체 승인사업 수) × 100% * 설치기간: 「2022년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에 관한 지침」 제12조 참고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기준</th> <th>배점</th> </tr> </thead> <tbody> <tr> <td>사업기간 준수율이 100%</td> <td>0</td> </tr> <tr> <td>사업기간 준수율이 90% 이상</td> <td>-5</td> </tr> <tr> <td>사업기간 준수율이 80% 이상</td> <td>-10</td> </tr> <tr> <td>사업기간 준수율이 70% 이상</td> <td>-15</td> </tr> <tr> <td>사업기간 준수율이 60% 이상</td> <td>-20</td> </tr> <tr> <td>사업기간 준수율이 60% 미만</td> <td>-25</td> </tr> </tbody> </table> ※ 2022년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사업승인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설치확인 신청기간 내 사용전점검(검사)를 기준으로 완료한 사업에 한하여 사업기간 준수를 인정합니다. ※ 사업 완료기한이 전문기업 모집 공고일 이후인 사업은 산출에서 제외합니다. ※ 신규업체(실적부재)의 경우 가점 0점 처리합니다.	기준	배점	사업기간 준수율이 100%	0	사업기간 준수율이 90% 이상	-5	사업기간 준수율이 80% 이상	-10	사업기간 준수율이 70% 이상	-15	사업기간 준수율이 60% 이상	-20	사업기간 준수율이 60% 미만	-25	-25 ~ 0
기준	배점															
사업기간 준수율이 100%	0															
사업기간 준수율이 90% 이상	-5															
사업기간 준수율이 80% 이상	-10															
사업기간 준수율이 70% 이상	-15															
사업기간 준수율이 60% 이상	-20															
사업기간 준수율이 60% 미만	-25															

⑨ A/S 미이행 실적(가감점, -4점 ~ 0점)

구분	판 단 요 소	배 점	
가감점	2022년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A/S 미이행 실적(감점 적용)		
	<b>기준</b>	<b>배점</b>	
	○신청자의 A/S요청을 수행하지 않은 건수의 합이 0건인 경우 또는 신규업체(실적부재)	0	-4 ~ 0
	○신청자의 A/S요청을 수행하지 않은 건수의 합이 1~5건인 경우	-1	
	○신청자의 A/S요청을 수행하지 않은 건수의 합이 6~10건인 경우	-2	
	○신청자의 A/S요청을 수행하지 않은 건수의 합이 11~20건인 경우	-3	
○신청자의 A/S요청을 수행하지 않은 건수의 합이 21건 이상인 경우	-4		

⑩ 의무사후관리수행(가감점, -30점 ~ 0점)

구분	판 단 요 소	배 점	
가감점	○ 의무사후관리수행 결과(감점 적용)		-30 ~ 0
	<b>기준</b>	<b>배점</b>	
	100%	0	
	99% 이상~100% 미만	-1	
	98% 이상~99% 미만	-2	
	97% 이상~98% 미만	-3	
	96% 이상~97% 미만	-4	
	95% 이상~96% 미만	-5	
	94% 이상~95% 미만	-6	
	93% 이상~94% 미만	-7	
	92% 이상~93% 미만	-8	
	91% 이상~92% 미만	-9	
	90% 이상~91% 미만	-10	
	89% 이상~90% 미만	-11	
	88% 이상~89% 미만	-12	
	87% 이상~88% 미만	-13	
	86% 이상~87% 미만	-14	
	85% 이상~86% 미만	-15	
	84% 이상~85% 미만	-16	
	83% 이상~84% 미만	-17	
	82% 이상~83% 미만	-18	
	81% 이상~82% 미만	-19	
	80% 이상~81% 미만	-20	
	79% 이상~80% 미만	-21	
	78% 이상~79% 미만	-22	
	77% 이상~78% 미만	-23	
	76% 이상~77% 미만	-24	
	75% 이상~76% 미만	-25	
	74% 이상~75% 미만	-26	
	73% 이상~74% 미만	-27	
72% 이상~73% 미만	-28		
71% 이상~72% 미만	-29		
71% 미만	-30		

⑪ 보급사업 감점이력(가감점, -5점 ~ 0점)

구분	판 단 요 소			배점	
가감점	○ 모집공고일 기준, 보급사업 감점이력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 ~ 0	
	기준		해당기간		배점
	보급사업 추진관련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전년도		-1
	보급사업 추진관련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최초시행일 기준, 참여제한 '정지' 기업 포함)		최근 2년간		-5
해당사항 없음			0		

⑫ 사건사고 유발(가감점, 참여제한 ~ 0점)

구분	판 단 요 소			배점	
가감점	○ 사건사고 유발 전문기업			참여제한 ~ 0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을 통해 시공한 설비 중 사건·사고 발생 시 (해당 사건·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업체 귀책사유 확인 건에 한하며, 해당 기간은 의무사후 관리기간으로 제한합니다.)				
	기준		배점		비고
	발생 횟수	1회	-5		· 해당 설비 소손 등 경미한 피해
		2회	-10		
3회		참여제한(1~2년)			
해당사항 없음		0			
* 진상규명 위원회를 통한 조사결과,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설비 외 재산상의 피해, 인명피해 등), 횟수에 관계없이 -10 또는 참여 제한(1~2년) 부과가 가능합니다.					

⑬ 기업형태(가점, 0점 ~ +5점)(중복가능)

구분	판 단 요 소		배점
가점	① 여성기업	1	0 ~ +5
	② 장애인기업	1	
	③ 사회적기업	1	
	④ 녹색전문기업	1	
	⑤ 고용우수기업	1	

※ 기업형태 가점관련 안내사항

1.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확인받은 기업을 말하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장애인기업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확인받은 기업을 말하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및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을 말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녹색전문기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확인받은 기업을 말하며,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29조에 따른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고용우수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을 말하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급한 “고용우수기업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첨2

# 〈주택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 점검비 지원 기준〉

### ○ 점검유형별 점검비 지원단가

(단위: 원 / VAT 포함)

구분	1차 단기	1차 장기	2차 단기	2차 장기
금액	46,000	93,000	186,000	280,000
교통비	실비 적용			

※ 점검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부품비 등)은 소비자 부담

※ 2차 방문 시 '1차 금액(단기 or 장기) + 2차 금액(단기 or 장기)'으로 점검비 지원 가능

※ 단, 2차 방문은 사유가 부적절할 경우 지원 불가 / 3차 방문 이상은 전액 소비자 부담

### - 점검유형

점검유형		소요시간	비고
1차 방문	단기	1시간 이하	고장원인 분석, 단순 고장조치 등
	장기	1시간 초과	
2차 방문	단기	2시간 이하	부품교환을 수반하는 점검
	장기	2시간 초과	

※ 소요시간 = 이동시간(왕복) + 점검(A/S) 시간

### - 이동시간 및 점검(A/S) 시간 산정기준

구분	산정기준
이동시간	기본 (1일 1개소 점검 시) 해당 기업의 본점(또는 영업) 소재지 ↔ 점검장소
	특수 (동일한 점검자가 1일 여러 장소 점검 시) 최초: 해당 기업의 본점(또는 영업) 소재지 → 최초 점검장소 두번째: 최초 점검장소 → 두번째 점검장소 : n번째: (n-1)번째 점검장소 → n번째 점검장소 → 해당 기업의 본점(또는 영업) 소재지 ※ 각 점검은 별도 건으로 인정함.
점검(A/S) 시간	1차 방문은 최대 30분, 2차 방문은 최대 1시간까지 인정

### - 교통비

(단위: 원)

구분	비고
실비 적용(제주도 부속도서* 방문에 따른 선박 이용에 한함.)	증빙자료(영수증 등) 제출 필수

※ 단, 동일 부속도서에 여러 점검 건이 있더라도, 부속도서당 최대 1일 1회만 인정(중복 지급 불가)

\* 제주도 부속도서: 마라도, 가파도, 추자도, 비양도, 우도 등



## 설치제품 명세서

사업명: 2023년 마을공동이용시설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제품현황

제품구분	인증마크 또는 기관	용량	모델명	제조사	제조국	인증년도	효율
모듈							
인버터							

※ 사용 제품 수에 따라 표의 삭제 및 추가 기재가 가능합니다.

※ 사업 진행 시 상기 제출한 제품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제품 변경 시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기제출한 제품들의 원산지 및 최저효율 기준으로 동급 이상에 대해서만 변경 가능)

<첨부서류> 제품별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각 1부.

년 월 일

기업명: ( ) 대표자: ( ) (인)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 설치가격 제안서

□ 사업명: 2023년 마을공동이용시설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가. 설치가격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원/kW

나. 하자보증기간

구분	하자보증기간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발전설비	년

년 월 일

기업명: ( ) 대표자: ( ) (인)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귀하

※ 밀봉 후 별도로 제출하십시오.

※ 모든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